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불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4년 12월 1일

청 원 인

성 명 :	이태호	(인) 외 4 인(법인)
주 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3-0666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이상민 (인) 외 4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성명 : 이태호 외 4명	
건명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 청원	
소개년월일	2014년 12월 1일	
<소개의견> 지난 7월 드러난 윤 일병의 집단구타 사망 사건은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13년 여군대위 자살 사건 등 군대 내에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고, 오히려 군의 사건 축소 및 은폐 문제만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특수성’을 이유로 군인의 자유·권리 제한과 인권침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징병제 하에서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었고, 국민 정서 또한 군인을 국가를 위한 희생적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군인도 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폭넓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군인도 시민의 일원으로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인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다음의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태호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2	한택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3	김금옥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4	박래균	서울 마포구 망원로 57 3층		
5	임태훈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303호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광진 의원		새 정치 민주 연합	국방위원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비례대표	
2	도종환 의원		새 정치 민주 연합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비례대표	
3	서기호 의원		정의당	법 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	
4	이상민 의원		새 정치 민주 연합	법 제사법위원회	대전유성구	
5	진성준 의원		새 정치 민주 연합	국방위원회	비례대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 청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졌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임.

그동안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및 병영문화 쇄신’을 외쳤지만, 군대 내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특수성’을 이유로 군인의 자유·권리 제한과 인권침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옴. 특히 징병제 하에서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었고, 국민 정서 또한 군인을 국가를 위한 희생적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군인도 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폭넓게 인식하지 못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의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군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군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를 금지하고 있어, 군인의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음.

지난 8월 6일 조직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그동안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부모-병사 24시간 소통, 자율휴가제 등 새로운 것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방안들만 발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수차례 권고하였고, 군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으나 국방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음.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 전에 군인은 시민의 일원으로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인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함.

- 가. 군인은 시민의 일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이며,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 나.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 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박탈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라. 군인은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지휘관은 법적 근거를 벗어나는 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하급자는 법적 근거 없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 마. 국가는 군인에게 보편적인 시민교육, 포괄적인 인권교육 및 국제인도법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바.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군인인권보호관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군인에게 인권침해발생시 부대 내부 뿐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국방부 소속의 군인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인권옹호 활동의 근거를 마련한다.

상세 내용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기본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임.

-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음.
- 군인은 병영생활이나 직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나. 국가는 군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는 자유, 인권, 평화를 존중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군대를 운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기준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는 군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실효적인 구제 절차와 방안을 제공해야 함.

다.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박탈당하지 않음.
- 국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라. 군인의 기본적 권리는 다음과 같음.

- 군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성적지향, 가문, 인종, 민족, 종교 및 정치적 견

해, 출신, 전과, 병력 등에 따라 임명, 보직, 진급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 당하지 않음.

- 군인은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폭행·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음.
- 국가는 군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군인은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음.
- 군인은 법률로 정한 근무시간 외에는 근로에 동원되지 않으며, 자기 계발과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국가는 군인의 사적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군인은 자기정보 통제권을 가짐. 특히 개인정보에 불리한 주장이나 평가 및 사유들이 기재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군인은 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근무 시간 이외의 공개적인 토론의 자유를 가지며,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한 학술·문화·예술·체육·친목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음.
- 군인은 군대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해 대표군인을 선출하여 부대 내의 결정과 논의과정에 참가할 수 있고, 대표군인, 군인가족 및 그 단체들의 건의에 대해서 부대장 및 국방장관 또는 그 대리인은 이유를 부기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야 함.
- 국가는 군인의 복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적정한 급여를 보장해야 함.
- 모든 군인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짐. 단, 노동단체의 결성·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근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단체 결성 및 단체 행동 등은 제외함.
- 모든 군인은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는 의식주, 급여,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가용자원의 범위 안에서 군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모든 군인은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는 의식주, 급여,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짐.
- 모든 군인은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외부관련자와 접견할 권리를 가짐.

마. 군인의 책임과 의무

- 군인은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성해야할 의무를 지님.
- 군인은 상호간에 전우애로써 단결하고 배려해야할 의무를 지님.
- 군인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군인사법, 형법이나 군형법에 따라 제재를 받음. 타인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군인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국제법에 반하는 명령, 직무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이행하지 말아야 함.
- 불법적인 명령을 발한 상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군형법, 형법 또는 군인사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짐.
- 지휘관의 권한은 법에 근거함. 따라서 법적 근거를 벗어나는 명령을 지휘관은 발할 수 없으며, 하급자 또한 법적 근거 없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

바. 군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를 명시함.

- 국가와 지휘관은 군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계관을 갖지 않도록 보편적인 시민 교육을 시행함.
- 군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명시함.
- 전쟁 등 비상사태 하에서도 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과 포로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여 국제인도법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명시함.

마. 국회 소속으로 군인인권보호관을 둘 것을 명시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군인의 인권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군인인권보호관을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고, 별도의 법률로 임명에 관한 사항을 예정함.
- 군인에게 인권침해발생시 부대 내부 뿐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국방부 소속의 군인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내에서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 국방부가 포괄적인 군인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군별로 장기적인 인권증진계획을, 부대별로 중단기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함.

끝.